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근거 마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등 현행 시행령을 보완하는 한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 반영,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안 제11조)

해운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5조제1항은 운항결손액과 관련이 없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운항결손액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인 제7항을 인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해운법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조항로 이외의 일반항로 운항명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항로”를 삭제하고자 함.

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납부방법 폐지(안 제12조의5)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추가(안 제23조의2제3호)

외항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내항선사를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 정착 도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각각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따른 보조항로”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항로 운항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한다.

제12조의5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u>법 제15조제1항</u> 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무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u>법 제15조제7항</u> ----- ----- ----- ----- -----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u>법 제15조제1항</u> 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 <u>법 제15조제7항</u> ----- ----- ----- ----- ----- ----- -----.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u>법 제16조제1항</u> 및 <u>제2항</u> 에 <u>따른 보조항로</u>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 ----- <u>따른</u> ----- ----- ----- ----- ----- -----

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 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

② (현행과 같음)

③ -----
운항명령-----

-----.

<삭제>

<u>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u>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연 락 처	(051) 773 - 5733